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S&S's Newsletter – 2020 년 02 월

고객사 및 독자분께,

S&S 회계법인의 2020년 02월 뉴스레터를 소개드립니다.

본 뉴스레터가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samuel230@hanmail.net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Ben Nghe Ward,
District 1, TP. HCM, Viet Nam

Tel: 84 (28) 39 104 996

Fax: 84 (28) 39 104 998

Web: <http://www.ssaudit.com>

Hanoi office:

7th Floor, Vinaconex 9 Building,
Pham Hung St., Me Tri Ward, Tu Liem Dist,
Hanoi, Viet Nam

Tel: 84 (24) 62 512 199

Fax: 84 (24) 62 512 201

유용한 정보가 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계법인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목차.....

1. 세무 및 세무행정

1.1 사업자세에 대한 시행령 22/2020/ND-CP (발표일: 2020년 2월 24일)

1.2 투자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공문번호 774/TCT-KK
(발표일 : 2020년 2월 21일)

2. 관세

2.1 수출품 생산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적용되는 세무정책에 대한 공문번호 858/TCHQ-TXNK
(발표일 : 2020년 2월 14일)

2.2 기계, 장비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저작권료 및 임차료에 대한 공문번호 938/TCHQ-TXNK
(발표일 : 2020년 2월 18일)

3. 기타

3.1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에 대한 공문번호 288/BHXH-QLT
(발표일 : 2020년 2월 18일)

3.2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회보험 혜택 정산에 대한 공문번호 422/BHXH-CSXH
(발표일 : 2020년 2월 13일)

3.3 임시거주증 유효성에 대한 공문번호 3341/BCA-V03 (발표일 : 2019년 11월 5일)

3.4 베트남 중앙은행의 각 은행에 대한 COVID-19 관련한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번호
1117/NHNN-TD (발표일 : 2020년 2월 24일)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1.1 사업자세에 대한 시행령 22/2020/ND-CP (2020.02.24)

2020년 2월 24일, 베트남 정부는 설립 첫 해에 해당하는 기업과, 생산/영업활동의 시작 첫 해에 해당하는 가정사업자 및 개인에 대하여 사업자세 면제를 부여하는 시행령 22/2020/ND-CP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해”의 기준은 회계연도가 아닌 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따릅니다.

특히 가정사업자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일자로부터 3년간 사업자세가 면제됩니다. 설립 첫해(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또는 설립 첫 3년(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점, 대표사무소 등은 본점이 부여받은 사업자세 면제 기간을 동일하게 부여받습니다.

공립학교 및 공립 유치원 역시 사업자세 면제택을 부여받으며, 동 시행령은 2020년 2월 25일 발효됩니다.

1.2 투자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공문번호 774/TCT-KK (2020.02.21)

2020년 2월 21일, 국세총국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공문번호 774/TCT-KK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공문에 따른 두 가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년 12월 31일자 시행 규칙 219/2013/TT-BTC의 제 18조 제 3절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EP 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규정은 2016년 8월 12일 발표 시행규칙 130/2016/TT-BTC 제 1조 제 3절에서 개정 및 보완됨)

- EP 기업이 아닌 기업이 생산/영업 이전의 투자단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 ✓ 시행규칙 219/2013/TT-BTC 제 15조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시행규칙 26/2015/TT-BTC 제 1조 제 10절에서 개정 및 보완됨)
- ✓ 시행규칙 219/20123/TT-BTC 제 18조 제 3절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시행규칙 130/2016/TT-BTC 제 1조 제 3절에서 개정 및 보완됨)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2.1 수출품 생산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적용되는 세무정책에 대한 공문번호 858/TCHQ-TXNK (2020.02.14)

2020년 2월 14일 관세청은 수출제품의 생산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무 정책과 관련하여 공문번호 858/TCHQ-TXNK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세면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물품 생산 시설을 임차한 경우: (시행령 134/2016/ND-CP 제 12 조 제 2 절)

- ✓ 기업이 수출품 생산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했으나 공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웃소싱한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 기업이 제조 가공에 필요한 설비, 공장이 있으며 사용권한을 보유한 경우로 관세청에 해당 공장을 신고한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 베트남기업이 외국당사자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 후 국내에서 하청한 경우:

- ✓ 시행령 134/2016/ND-CP 제 10 조 제 2 절을 만족할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2.2 기계, 장비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저작권료 및 임차료에 대한 공문번호 938/TCHQ-TXNK (2020.02.18)

시행령 60/2019 / TT-BTC 제 1 조 8 항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관세가격(Custom Value)에 저작권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실제 지불된 금액 또는 지불되어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 브랜드명 사용권한이 수입물품 사용에 관련된 경우
- + 브랜드명 사용권한이 물품계약의 한 조항인 경우

3.1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에 대한 공문번호 288/BHXH-QLT(2020.02.18)

2020년 2월 18일 호치민시 보험국이 발표한 공문번호 288/BHXH-QLT에 따르면 해외 본사에서 베트남 내부로 내부이전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2월 1일부터 의료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2020년 2월 의료 진단 및 치료에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3월부터 보험료 납부가 중단됩니다.

“내부이전”한 외국인근로자에는 매니저, 대표자, 전문가, 기술자가 포함되며 해외 본사에서 최소 12 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3.2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회보험 혜택 정산에 대한 공문번호 422/BHXH-CSXH (2020.02.13)

본 공문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조치가 필요한 개인은 격리 기간 중 병가 혜택이 부여됩니다. 현재 사회보험법 제 25 조는 병가에 대하여만 규정하며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조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이 동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베트남 사회보험부는 자가격리하는 의료시설이 사회보험 규정에 의거 자가격리된 개인에게 증빙서류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3.3 임시거주증 유효성에 대한 공문번호 3341/BCA-V03 (2019.11.05)

2019 년 11 월 5 일公安부는 공문번호 3341/BCA-V03 를 통하여 기업 합병의 경우 임시거주증(TRC)의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이 합병될 시 피합병 법인 기준 고용주가 변경되므로 피합병 법인의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 및 임시거주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 목적과 같이 노동 목적이므로 재발급에 대한 출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4 베트남 중앙은행의 각 은행에 대한 COVID-19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번호 1117/NHNN-TD (2020.02.14)

베트남 중앙은행은 COVID-19 와 관련하여 기업의 생산을 안정화 하고자 각 채무 기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정도를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다음의 방안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요청되었습니다.

- +채무 상환기한 조정, 대출이자 감면/면제
- +기업의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신규 대출 제공 등

각 은행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채무 기업의 피해 정도를 결정하여 협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0o0=====